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3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23일

발 의 자: 정준호, 강동길, 김 경,
김성준, 김영철, 김재진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서준오,
송경택, 신복자, 유정인,
이병도, 이소라, 이영실,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
전병주, 한 신, 홍국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에 관한 시민 염려가 커지고 있음.
-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유통시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하고, 특히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유통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 시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39조 제1항에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전단 중 “도매시장”을 “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농수산물 안전성 검사) ① 시장은 <u>도매시장</u> 에 반입되는 농수 산물에 대하여는 「농수산물 품질 관리법」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 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<u>한</u> <u>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</u> <u>실시할 수 있다.</u>	제39조(농수산물 안전성 검사) ① ----- <u>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</u> <u>위하여 도매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며</u> <u>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</u> <u>수 있다.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</u> <u>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</u> <u>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</u> <u>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